

## II. 정정보도청구사례

### 보도 내용이 설령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자 판결 (2005가합24245)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장○○가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원고의 딸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학교 측에 해명과 보상을 요구하던 중, 원고의 딸과 상담했던 양호교사(이하 망인)가 원고의 딸의 두통은 교사의 체벌과 관련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망인에게 심한 항의를 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망인이 끝내 자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각 보도는 원고를 사소한 체벌 문제로 교사들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학부모 또는 망인의 자살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학부모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체벌 사건의 진행경위, 이 사건 각 보도에서의 표현방법, 취재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체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항의나 진정제기로 인한 경찰 수사 등으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 설령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위 각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었던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24245 정정보도청구등

원 고 : 장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천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정 국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4.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론종결 : 2005. 10. 19.

판결선고 : 2005. 11. 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KBS 뉴스9'의 첫머리에, 피고 문화방송 주식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의 첫머리에, 각 글자는 통상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하여 프로그램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두줄로 "2004. 4. 9. 평택 ○○여중 양호교사 자살, 학부모와 관계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피고 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프로그램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각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제8면 좌측 중간부분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대체목 부분은 고딕체 특호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명조체 30호 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고딕체 20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10호 활자로 게재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처음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제3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대체목 부분은 고딕체 특호 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명조체 30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10호 활자로 게재하라.

라. 위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후 이행시까지 각 1일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4호증의 4, 5, 6, 7,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0호증(을제4호증의 3과 같은 것으로 경찰 작성의 공○○에 대한 진술조서이다)의 기재는 앞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을제4호증의 2, 8, 12의 각 기재는 그와 같은 공○○의 진술을 기초로 한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므로 역시 믿기 어렵다), 갑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각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이하, 피고 동아일보라 한다)는 각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한

편, 원고는 평택시 소재 ○○여자 중학교의 학생이던 공○○의 모이다.

나. 체벌 사건의 발생과 그 이후의 경위

(1) 평택시 소재 ○○여자 중학교에 다니던 원고의 딸 공○○은 2003. 9월 중순 오전경 국어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어교사 김○○로부터 꿀밤 2대를 맞았다.

(2) 공○○은 2003. 11. 21.경부터 2003. 11. 26.까지 ‘부비동염’, ‘두통’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공○○의 위와 같은 두통 등이 국어교사 김○○의 위와 같은 체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3. 11. 27.경 ○○여자 중학교 교장 장○○을 찾아가 체벌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여 2003. 12. 30. ○○여자 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체벌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위 장○○, 김○○, 공○○의 담임교사였던 윤○○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4) 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고는 공○○이 김○○로부터 체벌당하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와 달리 김○○의 체벌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던 위 장○○은 공○○이 평소에 자주 양호실에 갔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여자 중학교 보건교사이던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을 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공○○이 양호실에 왔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였다.

(5) 이에 망인은 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이 아픈 것은 선생님에게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공○○은 떨어지는 화분에 머리를 스쳐서 아픈 것이다. 모친이 던진 가위에 눈부위가 스쳐 찰과상을 당했다. 눈이 충혈된 상태로 입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위와 같은 망인의 진술 등으로 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체벌관련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다. 원고의 진정제기 등과 망인의 자살

(1) 그 후 원고는 2004. 1월경 위 장○○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망인을 참석시켜 허위 내용과 비밀사항인 상담내용을 공개하도록 사주’ 하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윤○○에 대하여는 ‘원고가 요청한 상담을 묵살하였다’는 이유로, 김○○에 대하여는 ‘공○○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는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학생과의 상담내용을 아무런 자격도 없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평택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 그로 인하여 원고는 진정인으로, 위 장○○, 김○○, 윤○○, 망인 등은 피진정인으로

2004. 2월 초순경부터 평택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에서 피진 정인들인 위 4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을제4호증의 2).

(3) 망인은 2004. 2. 13. 평택경찰서에서 공〇〇이 양호실에 온 경위 등과 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〇〇는 위 경찰서에서 공〇〇에 대하여 꿀밤 2대를 때린 혐의로 2004. 3. 31.자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았다.

(4) 그와 같이 조사가 계속되던 2004. 4. 8.경 오전 6시경 망인은 거주하던 평택시 소재 아파트 16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이 남긴 수첩에는 ‘내가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다.

#### 라. 피고들의 보도

망인이 자살하자,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4. 4. 8. 저녁 9시 뉴스인 ‘KBS 뉴스9’에서 “증언한 여교사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5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1보도’라 한다)를, 피고 문화방송은 2004. 4. 8. 저녁 9시 뉴스인 ‘MBC 뉴스데스크’에서 “체벌문제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6과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2보도’라 한다)를 각각 방영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9. ‘조선일보’ A8면에서 “‘꿀밤 2대’가 부른 여 교사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7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3보도’라 한다)를, 피고 동아일보는 2004. 4. 9. ‘동아일보’ 제31면에서 “‘체벌 조사’ 받은 여 교사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8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4보도’라 한다)를 각각 게재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공〇〇은 2003. 9월 중순경 김〇〇로부터 꿀밤 2대의 체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〇〇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맞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이고, 한편, 원고는 망인과 단 2회 통화한 사실 밖에 없고, 망인을 직접 고발하거나 수시로 항의한 사실이 없어 망인의 자살과 원고의 행위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들은 위 각 보도에서 ‘공〇〇이 꿀밤 2대의 체벌을 받았을 뿐 김〇〇의 체벌로 인하여 머리가 아팠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소한 체벌을 문제삼아 분쟁위원회까지 열리게 하고, 거기에서 공〇〇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항의하거나 망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으로 망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를 견디지 못한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그 외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기 전에 원고측에 사실확인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원고가 망인에게 직접 위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그 부분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가. 피해자의 특정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1보도에는 ‘체벌당한 학생 어머니’ 또는 ‘체벌당한 학생’이라고만 보도하는 등으로 원고나 공〇〇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1보도에는 ‘평택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꿀밤 2대의 체벌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호교사인 망인이 체벌당한 학생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를 접한 사람 중 원고나 공〇〇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1보도에서 언급되는 ‘체벌당한 학생 어머니’나 ‘체벌당한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마찬가지로 피고 문화방송,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이 사건 2 내지 4 보도에도 ‘평택의 한 여자 중학교’, ‘양호교사’, ‘평택의 H 여중’ 등으로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나 신문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 또는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 또는 신문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또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및 기사 내용이 시청자 또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꿀밤 2대에 불과한 체벌을 받은 공○○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망인이 공○○의 머리가 아픈 것은 체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망인의 진술을 이유로 망인에게 수 회 전화를 하여 항의하고, 망인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그와 같은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던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항의와 진정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은 망인이 심한 심리적 압박 또는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결국 망인이 자살하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는 인상을 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1보도에는 ‘숨진 여 교사는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여 망인의 자살 원인이 원고의 항의나 진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망인의 자살 원인이 원고의 항의나 진정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사건 1보도는 망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망인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보도의 마지막에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꿀밤 몇 대를 때린 체벌이 문제가 돼 직접 관계없는 한 교사가 목숨까지 끊고 말았습니다”라고 끝맺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보도에서의 사실 적시 또는 그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받는 인상은 위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를 사소한 체벌 문제로 교사들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학부모 또는 망인의 자살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학부모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는 학교체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각 보도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각 보도는 학교 체벌과 관련된 것으로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의 관심사라 할 것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망인의 자살 원인에 관하여 정확하게 판명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항의나 진정제기로 인한 경찰조사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망인의 유일한 자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다툼 없는 사실, 강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공〇〇은 2003. 9월 중순경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어교사인 김〇〇로부터 꿀밤 2대를 맞은 사실, 공〇〇은 그무렵 같은 급우 등에게는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을제4호증의 5), 양호교사인 망인에게도 떨어지는 화분에 머리를 맞아 아프다고만 하였을 뿐 위 체벌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은 사실(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와 같은 체벌로 인하여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거기에서 공〇〇이 김〇〇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망인은 '공〇〇이 양호실에 와서 자신에게 「머리가 아픈 것은 떨어지는 화분에 머리를 맞았기 때문이다. 원고가 던진 가위가 눈 부위를 스쳤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공〇〇이 망인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2003. 12. 8.경으로, 공〇〇이 이 사건 체벌 무렵 양호실에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망인의 그와 같은 진술로 인해 분쟁조정위원회는 명확한 결론 없이 종료된 사실, 원고는 망인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진술 경위 등을 따지기 위해 2003. 12. 30. 및 2004. 1. 2. 전화하였고, 2004. 1월 초순경에는 김〇〇, 망인 등에 대해 평택경찰서에 1의 다.(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을 제기한 사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04. 2. 13. 평택경찰서에서 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〇〇여자 중학교측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자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 되던 중 자신의 수첩에 '십자가는 제가 메고 가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2004. 4. 8. 투신 자살한 사실, 피고 문화방송, 동아일보는 이 사건 2, 4보도를 하기 전에 〇〇여자 중학교의 교장 장〇〇, 망인이 경찰조사 후 심리적으로 괴로워했다는 망인의 남편의 진술, 진정사건

에 대한 경찰에서의 조사과정 등을 취재한 다음 이 사건 2, 4보도를 각각 방영·게재한 사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피고 문화방송 및 소외 SBS의 취재결과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1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더하여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와 그에 이은 원고의 항의전화 및 진정제기, 경찰의 망인 등에 대한 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벌사건과 관련한 위 일련의 과정에서 평범한 양호교사이자 여자인 망인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는 ‘경찰은 ... 자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라고 보도하여 망인이 자살하게 된 동기를 추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 체벌사건의 진행경위, 이 사건 각 보도에서의 표현방법, 취재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체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항의나 진정제기로 인한 경찰수사 등으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도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 설령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위 각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 문화방송이 ‘원고가 망인을 직접 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 피고 문화방송, 조선일보 등이 ‘원고가 망인에게 수 회 항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 및 피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원고가 망인에게 직접 위자료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불일치 또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에 관하여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별지 1~8〉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 해당 회사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과 정황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자 판결 (2005가합19052)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홍 부장판사)는 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할 때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 상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4년 4월 3일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사기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고의 회사 내부를 촬영해 공개하고 원고와의 인터뷰 내용 등을 취재하는 등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를 편취하는 업체”로 시청자들이 원고와 원고의 회사를 인식하게끔 묘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은 일반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보도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원고의 회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돈을 편취하는 업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보도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회사가 관련 절차를 모두 구비하고 펜션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 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펜션 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 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고 그 후에 보도를 했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회사가 사기업체임을 인정할만한 사실 등에 관하여 취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회사를 사기업체로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 할 것

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얼굴이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원고의 목소리가 음성변조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고 이에 대해 동의를 얻은 바 없으며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를 접하고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4년 4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172)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19052 정정보도등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천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전 태 진, 김 혜 라

변론종결 : 2005. 12. 14.

판결선고 : 2005. 12. 28.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부터 2005.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의 첫머리에서 통상의 위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씨 크기로, 프로그램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두 줄로 "주식회사 ○○○○○과 대표이사 김○○는 펜션 사기분양과 관계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프로그램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후 이행 시까지 1일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8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을제1호증(방송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방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MBC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04. 4. 3.자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

피고는 2004. 4. 3. 21:00경에 시작하는 MBC의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아래와 같은 앵커의 멘트, 취재기자의 설명, 원고 및 피해자들과의 인터뷰, 금융감독원 소속 조○○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 방송시간이 약 1분 37초 정도인 뉴스를 방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표시한 ① 내지 ⑥부분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보도에 사용된 소외 회사 사무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원고의 얼굴 등과 원고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촬영된 것이다.

**①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앵커의 소개**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고수익 사기'

앵커 : 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펜션이나 상가 분양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속할 법규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② 취재 기자인 김○○의 설명**

화면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사무실 입구 모습과 함께 보

이고, 이후 소외 회사의 사무실 내에 전시된 분양 중인 펜션모형과 조감도가 보인다.

김□□ :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사무실, 제주에 멋진 펜션을 분양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③ 원고와의 인터뷰

화면 : 아래 원고의 말(원고의 얼굴은 직접 보이지 아니하나, 음성 변조 등의 조치가 없었다)과 함께 화면 가운데 ‘투자자 모집업체’, ‘1억원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원 정도 가능하다’ 라는 자막

원고 :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 ④ 소외 회사 사무실 내부 모습과 김□□의 보충 설명

화면 : 사무실 내부에 부착된 ‘19평형 1억 3,400만 원~1억 5,100만 원, 용자 : 40~50% 가능, 분양방법 : 등기분양, 수익성 : 가구당 월 200만 원 수익예상, 공사현황 : 30평형은 이미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5월말 완공예정, 펜션 사실 분을 소개하시면 후사해 드림’ 이라고 기재된 분양안내서의 분양안내장,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김□□ : 연 24%, 은행이자보다 5배가 높은 수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수익 보장 부동산에 잘못 투자하면 고스란히 돈만 떼이게 됩니다. 회사원 박 모 씨는 최근 펜션 투자제외에 속아 500만 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보도의 처음부터 김□□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기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이 화면으로 방영되었는데, 약 26초간이다]

### ⑤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화면 : 김□□의 설명에서 피해자 박 모 씨로 소개된 여자와의 인터뷰 화면(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되었다)

피해자 박 모 씨 : 펜션에서 나오는 이익을 분배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500만 원을 내고 평당 만 원씩 671만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두 달 지난 다음에,

김□□ : 김 모 씨도 3,000만 원에 지방 상가를 분양받으면 일주일에 90만 원씩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맡겼다가 원금까지 떼였습니다.

화면 : 피해자 김 모 씨로 보이는 남자와의 인터뷰 화면

피해자 김 모 씨 : 배당금이 나와야되는데 배당금이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더라고요.

김□□ : 이렇게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일반 자금모집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로 위장하고 있어 마땅히 처벌할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⑥ 금융감독원 소속의 조○○과의 인터뷰

화면 : 인터뷰 화면

조○○ : 부동산의 존재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동산거래를 가장한 자금모집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존재 여부와 법적권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다. 소외 회사의 사업

(1) 소외 회사는 ○○에 펜션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3. 7. 3. 권○○ 외 1인 명의로 ○○○군수로부터 ○○○군 ○○읍 ○○리 79-12 외 2필지에 건축면적을 268.10㎡(연면적 1,032.48㎡)로 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2003. 10. 14.경 주식회사 ○○리조트, 주식회사 ○○토지개발, 권○○(위 ○○리조트와 ○○토지개발의 대표이사이다), 김○○, 박○○, 강○○(모두 ○○에 본점을 두고 있거나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와 사이에, “○○ ○○○군 ○○읍 ○○리 9-5 외 6필지에 신축공사 중이거나 신축예정인 빌라(25평 32세대, 16평 68세대)에 관한 분양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분양분 16세대(신축 중인 부지에 건립되는 세대)는 2004. 2월말까지 분양하고, 2차분양(신축예정지에 건립되는 세대)은 건축허가일부터 8개월 내’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다.

(3) 소외 회사는 ○○ 북○○군 ○○읍 ○○리 79-12 지상에 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동(A동, B동)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다세대주택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2004. 6. 3. 위 권○○ 명의로, 같은 리 79-1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규모(A동)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B동)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2004. 10. 28. 위 ○○리조트 명의로, 같은 리 79-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4. 10. 7. 강○○ 명의로, 같은 리 79-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A동)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B동)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2004. 9. 24. 김○○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보도에서의 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인지의 여부

(1)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

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은 물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보도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전체 보도 시간이 1분 37초 정도이고, 위 ①부분에서 화면 우측 상단에 ‘고수익 사기’라는 자막을 표시하면서 앵커가 ‘부동산 사기’, ‘펜션이나 상가분양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행위’를 보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위 ②, ③, ④부분에서는 소외 회사 사무실의 전경과 원고와의 인터뷰 내용, 김□□의 보충설명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펜션분양 사업을 하면서 은행이자보다 5배가 높은 수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곳에 잘못 투자하면 ‘돈만 떼이게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그에 이어지는 위 ⑤부분에서 실제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인터뷰 및 위 ⑥부분의 금융감독원 소속의 조○○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앵커의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첫머리의 설명, 소외 회사 사무실의 모습과 함께 보도되는 취재기자 김□□의 설명, 원고와의 인터뷰,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의 인터뷰, 사기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소속 조○○의 인터뷰와 김□□의 마무리 멘트, 이 사건 보도에서의 화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를 편취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와 관련된 화면이 고수익을 장담하는 펜션분양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기초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고, 사기업체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도의 경우,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가 보도를 시작하면서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사무실’이라고 적시하였음을 물론 ‘○○에 멋진 펜션을 분양한다’라고

지시한 점, 소외 회사 사무실의 내부 곳곳을 보여주면서 소외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펜션의 조감도 등을 방영한 점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소외 회사를 지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펜션사업의 주체인 소외 회사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앵커의 멘트가 끝난 다음 시작된 이 사건 보도의 첫머리에 원고가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약 2초간 보여진 사실, 그 후 이 사건보도 내용 중 원고의 목소리가 변조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소외 회사가 펜션분양 등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업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보도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일반 시청자들의 평가 또한 소외 회사에 대한 평가와 같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소외 회사는 물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명예도 아울러 훼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펜션분양을 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제보로 인하여 시작된 것으로, 피고 소속 기자인 김□□이 그 제보상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사례를 취재한 결과 그와 같이 사기분양을 한 업체인 주식회사 □□□□라는 회사의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동 ○○○○ ○○○타워 2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사무실에는 □□□□라는 회사는 없고, 소외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입구 및 실내에는 '○○리조트 분양(○○펜션),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예상' 등이라는 광고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나아가 김□□이 원고에게 투자설명회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원고는 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사무실에는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음은 물론 직원들이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취재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에게 그와 같은 취재결과를 얘기하자, 조○○이 단속에서 적발된 유사수신행위와 비슷한 업체인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또 김□□이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되기 전인 2004. 4. 1.경 및 2004. 4. 2.경에 ○○도청 및 ○○○군청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소외 회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정한 휴양펜션업 등록을 한 바 없고, 다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며, 그 규모도 소외 회사의 사

무실에 있던 30평형 32세대, 19평형 68세대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 회사도 피해사례에서 언급된 업체와 비슷한 유사수신편취 가능성 크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보도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다.

#### (2) 공익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펜션이나 상가분양을 가장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집한 이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내세우는 사기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 그 보도 목적은 일반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그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3) 진실성

소외 회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돈을 편취하는 업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보도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4) 상당성

(가) 다음으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검을제2호증(이 사건 방송의 자료가 된 촬영화면)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4. 3. 31.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팀의 조○○은 피고 등의 언론사들을 상대로 '1주일에 투자원금의 13%를 10주 동안 지급해주고, 자신들이 경락받은 건물 일부를 분양해주는 조건으로 투자하라는 업체의 유혹에 속아 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경락사실 자체가 없었고 동 업체는 잠적한 사례' 등의 피해사례가 소개된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의 특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② 피고 소속 기자 김○○은 그와 같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위 보도자료에서 피해사례로 소개된 피해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한 결과 한 피해자로부터 사기업체의 사무실이 강남구 ○○○동 ○○○타워 2층에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4. 1.경 한국방송공사 소속의 기자 윤○○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③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김○○이 취재한 결과는 검을제2호증(원본테이프)과 같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검을제2호증에 대한 녹취록인 을제6호증 참조).

『김○○과 위 윤○○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안내를 하는 여자 직원에게 '여기 뭐하는 회

사냐'라고 물었으나 그 여자직원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다시 '펜션 분양하는 곳 이냐'고 질문하자, 여자 직원이 '펜션이라고 진작 말씀하시지'라고 대답하면서 위 사무실 내의 원고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윤○○과 김□□은 원고에게 '위 사무실에서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라는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 및 원고와 함께있던 다른 사람이 '선물옵션을 하던 사람들은 이사를 갔다'고 대답하는 등으로 서로 선물옵션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그 사이 피고 회사의 카메라 기자는 원고의 방 안 벽에 걸려있던 위 펜션의 조감도를 촬영하였고, 윤○○과 김□□이 '사무실 입구에는 3,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난다. 이런 것도 붙어있던데'라고 질문하자, 원고 등은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익 2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윤○○과 김□□은 원고에게 '펜션분양하는 곳인지, 투자유치를 하는지, 투자설명회를 하는지' 등을 질문하였고, 원고 등은 '펜션분양을 하지만 투자유치는 하지 않고, 실수요자를 찾고 있으며, 투자설명회를 따로 하지 않으나 그냥 설명하는 걸 투자설명회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김□□이 다시 '언제쯤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원고 등이 '지금 2개는 다 지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 사무실에는 펜션분양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듯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었고, 위와 같은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윤○○과 김□□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갔으며, 그 때 피고 소속 카메라 기자는 그와 같이 윤○○과 김□□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나가는 장면과 소외 회사 사무실 입구의 복도에 부착되어 있는 펜션의 조감도를 다시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 중에 원고가 걸어 나오는 화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한편, 소외 회사는 앞서 본 ○○펜션(○○리조트)을 분양하면서, 「坪수 : 30평형 32세대, 19평형 68세대, 고품격 펜션, 호텔보다 좋은 시설, 분양가 : 30평형 1억 8,000만 원~ 2억 500만 원, 19평형 1억 3,400만 원~1억 5,100만 원, 용자 : 40%~50% 가능, 등기분양 : 가구당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예상, 30평형은 이미 완공, 나머지도 5월말 완공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다.

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휴양펜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휴양펜션업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행한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 제53조, 제107조 등 참조),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위 ○○리조트는 위 법 또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휴양펜션업 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 김□□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 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모두 구비하고 펜션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더 나아가 소외 회사가 고수의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서와 같이 소외 회사를 ‘펜션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유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것과 같이 그 법적 권리 등에 관하여 중대한 흠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흠을 숨기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 또는 부동산 거래를 가장한 자금모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한 다음 보도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을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을제2호증에 대한 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하였던 것처럼 소외 회사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편취하는 업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보도는 검을제2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촬영된 ‘김□□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 입구에 서 있는 장면’을 이 사건 보도의 도입부로 사용하고 있고, 사기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이 사건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 ‘원고가 월 수익에 관하여 말하는 부분’ 등만을 편집하는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군청에 질의한 결과 소외 회사 명의로 펜션분양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후인 2004. 5. 10. 북○○군청에 그와 같은 사실을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를 방송하기 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김□□이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이전에 ○○○군청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리조트 등이 위 특별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김□□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와 같이 소외 회사가 부동산거래를 가장한 자금모

집행위를 하였다거나, 실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취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를 이 사건 보도에서와 같이 '사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3.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는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첫머리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약 2초간 방영되었고(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이 사건 보도 중에도 원고의 목소리가 음성변조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며, 그와 같은 원고의 얼굴이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원고의 목소리가 방송되는 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알고 있는 주위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를 접하고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및 정정보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보도의 목적 및 구성, 보도 시간, 이 사건 보도에서 직시된 소외 회사 또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펜션분양업의 주체인 소외 회사인 점, 소외 회사와 원고의 관계, 이 사건 보도 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소외 회사인 점, 이 사건 보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반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얼굴 및 목소리를 직접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4의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얼굴 또는 목소리가 방영된 시간 등 이 사건 반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위자료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 사건 보도의 방영일)인 2004.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8.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위 기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법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 **방송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21.자 판결 (2005가합4834)

###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21일 군인공제회가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및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인 KBS가 2005년 2월 15일 「KBS뉴스9」, 「뉴스라인」프로그램에서 원고와 한 영농법인이 납품가격과 납품량을 정하여 국산콩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중 콩 값이 떨어졌다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납품가격을 변경, 계약을 해지하여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이 사건 계약은 군납용 두부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국산콩에 관한 납품계약이므로, 이 사건 방송은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으로, 언론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공공법인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감시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계약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정단가를 정하여 이를 영농법인에게 강요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방송내용에 원고를 비난하는 표현 및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5년 3월 9일 중재신청(2005서울중재62)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 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 **판결문**

사 건 : 2005가합4834 정정보도및위자료

원 고 : 군인공제회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2 군인공제회관

대표자 이사장 김 승 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동 완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송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변론종결 : 2005. 9. 23.

판결선고 : 2005. 10. 21.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방송되는 21:00 'KBS 9시 뉴스 현장추적' 과 23:00 '뉴스라인' 프로그램의 전국 뉴스 시간대에, 화면상단에 제목은 30급 고딕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고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글자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1회 낭독하여야 한다.

나. 만약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가' 항 기재 기간 안에 위 '가' 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각 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한국방송공사, 송○○은 각자 금 1억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5.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 송○○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군인공제회법(1983. 1. 31. 법률 제3689호)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KBS 9시 뉴스 현장추적' 및 '뉴스라인'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송○○은 피고 공사 소속의 사회부 취재팀 기자이다.

나. 원고와 소외 ○○영농조합법인(이하 ○○이라 한다) 사이의 분쟁

(1)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직영사업소인 □□식품사업소에서 군납 두부 제조용으로 쓸 콩을 구입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2004. 6. 16. ○○과 사이에, 국산두부콩 1,000톤에 관하여 계약단가 6,620원/kg, 납품시기 2004. 12. 20.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되, 특수조건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성수출회기를 기준하여 계약체결 당시 단가보다 5/100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고, 물가변동을 산정은 물가변동적용시점 전월기준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표가격을 기준하여 인상, 인하율을 적용한다"(특수조건 제25조,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라고 정하여 국산콩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그동안 확보한 콩을 납품하기 직전인 2004. 12. 2.경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계약단가가 확정단가인지 변동단가인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바, 원고는 2004. 12. 23. ○○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며 '2005. 1. 1.부터 납품되는 물량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2005. 1. 4.~1. 7. 사이에 방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이 원고에게 '협의를 통하여 단가를 결정할 것인지, 혹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04. 1. 4. ○○에게 국산두부콩의 가격을 2005. 1. 1.부터 4,296.26원/kg으로 수정하므로, 위 단가에 따라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데, 위 수정단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한 국산콩의 12월 평균단가였다.

(4) 이에 대하여 ○○이 위 수정단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2005. 1. 11. 다시 ○○에게 같은 달 14. 17:00까지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보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5) 이후 ○○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05. 1. 15. ○○에게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

아 납품을 취소하고, 기납품물량에 대해서는 위 수정단가인 4,296.26원/kg으로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를 뒤인 17.에는 ○○에게 이 사건 계약을 같은 달 15.자로 해지하므로 계약보증금 662,000,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 다. 피고 송○○의 취재경위

(1) 피고 송○○은 2005. 1.경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검색하다가 ○○의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군인공제회의 횡포’란 제목의 탄원서를 읽게 되어 이○○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문구 등을 확인하였는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수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의 문구에 의하면 쌍방합의를 통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옳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2) 이에, 원고와 ○○ 사이의 분쟁을 취재하기로 마음먹은 피고 송○○은 2005. 1. 25.경 전남 함평 소재 ○○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단가는 확정단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뷰하는 한편, 납품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콩을 촬영하였고, 2005. 1. 26.에는 군인공제회 본사를, 2005. 1. 27.에는 원주시 소재 □□식품사업소를 각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단가가 변동단가인지, 변동단가라면 이○○에게 그 내용을 알렸는지, 변동단가라 하더라도 왜 12월의 콩가격을 적용하는지에 관하여 취재를 한 후, 그 다음날 이○○과 함께 다시 □□식품사업소를 방문하여 대질인터뷰를 시도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식품사업소측에서 이○○과의 기존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식품사업소측의 거부로 녹음테이프를 제공받지는 못하였다.

(3) 이후 피고 송○○은 □□식품사업소 및 ○○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취재하였으나, 역시 이 사건 계약단가가 변동단가인지 확정단가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었고, 이에 다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변동단가로 보아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더라도 쌍방합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였다.

#### 라. 이 사건 방송 내용

피고 공사는 2005. 2. 15. 21:00에 KBS 제1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KBS뉴스9’의 ‘현장추적’ 프로그램에서 “계약 일방적 해지”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23:00에 KBS 제1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뉴스라인’ 프로그램에서 “맘대로 계약해지”라는 제목으로, 각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피고 송○○이 취재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방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인공제회 횡포에 멧드는 농심’

이란 제목으로 위 '현장추적' 프로그램의 방송내용을 게시하였는바(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방송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가격인하 요구: 한 영농법인이 지난해 6월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납품가격과 납품량을 정하여 국산콩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납품시기인 12월이 되자 군인공제회가 시중 콩 값이 떨어졌다며 납품가를 4천 2백원대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2) 가격인하 요구의 근거: 군인공제회는 계약 조건상에 물가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가격수정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어디에도 납품 당시 시중가격으로 다시 계약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3) 가격인하시 손해의 정도 및 손해의 주체: 4천 7백원대 가격으로 콩을 미리 사 모은 농민들이 앉은 자리에서 1킬로그램 당 5백원씩 적어도 5억원의 손해를 본다.

(4) 계약해지와 계약불이행금의 청구: 군인공제회는 납품가격만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난 15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불이행금 6억 6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영농조합에 통보하였다.

(5) 평가: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감사까지 받은 준국가기관인 군인공제회가 농민들의 입장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위 특수조건에 정한 요건이 발생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 이 사건 계약단가가 확정단가라고 주장하며 수정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2005. 1. 15.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이며, ○○은 영리법인일 뿐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방송에서는 마치 원고가 농민들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납품단가를 낮추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피고들은 각자 1억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군 장병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부당해지 문제를 다룬 이 사건 각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보도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 가.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즉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 구성의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방송에서는, 원고가 농민들과 콩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콩 가격이 하락하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농민들이 이를 거부하자 납품계약 자체를 해제한 후 계약불이행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계약의 일방적 해지'라는 제목하에 보도하고 있고, 보도 말미에 준국가기관인 원고가 농민들의 입장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임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농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1) 위법성의 판단기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 (2) 공공성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이 사건 계약은 군납용 두부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국산콩에 관한 납품계약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은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언론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공법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감시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3) 진실성 또는 상당성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도 내용이 지엽 말단적인 부분이나 사소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각 방송에서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사실이 진실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우선 ① 가격인하의 근거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 사건 특수조건에 의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성수출회기의 단가가 계약체결 당시의 단가보다 5/100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성수출회기의 단가'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조항은 없는 점, ② 그 결과, ○○에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단가에 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에게 수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5. 1. 4.~1. 7. 사이에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위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05. 1. 4. 수정단가를 일방적으로 국산콩의 12월 평균단가로 정한 후 ○○에게 위 단가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이를 거부하자, 새로운 가격을 제시함이 없이 ○○의 거부를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이 사건 각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에게 계약보증금 662,000,000원을 납입해 줄 것을 실제로 요구한 점, ④ 손해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년 동안 1,000톤의 콩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 미리 콩을 확보할 필요

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일정량의 콩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성수출회기 가격으로 계약단가를 수정할 경우 성수출회기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각 방송에서 보도된 손해액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보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손해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단가로 납품하거나 혹은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어 납품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될 '법적 주체'는 ○○이라고 할 것이나, ○○이 농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영농법인인 이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의 구성원들인 농민들이 손해를 입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아닌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시중의 콩가격이 원래의 납품단가보다 훨씬 하락한 상황에서 이 사건 특수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 이 때문에 ○○이 이 사건 계약단가를 확정단가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수정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 사이의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은 원고가 ○○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단가를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강요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에 원고를 비난하는 표현 및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방송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동 영

판사 최 철 민

판사 임 효 미

□